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대여금

원 고 [REDACTED]

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조정장 판사 [REDACTED]

조 정 위 원 [REDACTED]

법 원 주 사 [REDACTED]

원고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출석

피고 및 조정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각 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,000,000원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(계좌번호: [REDACTED])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, 22회 분할하여 2022. 8.부터 2024. 5.까지 월 2,0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
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미지급된 돈과 이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2.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에 이 사건 재판 및 [REDACTED]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.

4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